

보도자료

2010년 12월 22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나.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2530) 다.,라.,마 뉴미디어정책과 손승현과장(2450)
바.,사.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 과장(2430) 아. 개인정보보호윤리와 김광수과장(2770)
자. 시장분석팀 김상부 팀장(2650)
[보고안건]
가.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 과장(2350)

2010년 제7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합하여 진행하고,
-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

나.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

- (주)CJ헬로비전이 신청한 (주)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인가하기로 의결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③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④이용자 보호 ⑤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기간통신사업 양수를 인가함

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과 SK텔링크(주)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사업자명	조건 내용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 시청자 불만 해결 등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2011년 2월까지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할 것 ○ 방송 품질 향상과 시청환경 개선을 위한 위성 중계기 효율화 방안을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할 것
SK텔링크(주)	○ TU미디어(주)와의 합병 시 부과된 조건 이행과,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수할 것 ○ 방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할 것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 SK텔링크(주)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따라 (주)강원민방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사업자명	조건 내용															
(주)강원민방	○ 최초 지상파DMB사업 허가시 사업계획서 상의 미 구축한 중계망(2011~2012년)과 청문 시 제출한 구축계획(2013년 6월)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기한은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table><tr><td></td><td>2011년 12월까지</td><td>2012년 12월까지</td><td>2013년 6월까지</td><td>합 계</td></tr><tr><td>1~2kw</td><td>2개국</td><td>1개국</td><td></td><td>3개국</td></tr><tr><td>100w</td><td></td><td></td><td>2개국</td><td>2개국</td></tr></table>		2011년 12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2013년 6월까지	합 계	1~2kw	2개국	1개국		3개국	100w			2개국	2개국
		2011년 12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2013년 6월까지	합 계											
	1~2kw	2개국	1개국		3개국											
	100w			2개국	2개국											
○ 위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2013년 12월까지의 방송 보조국 추가 구축계획을 재허가 이후 2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2013년까지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허가유효기간 3년

마. 하나방송(주) 재허가에 관한 건

-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이 2011년 2월 11일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하나방송(주)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하여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허가 조건>

-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매 분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분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하나방송(주)의 이행각서, 최다액출자자인 (주)커뮤닉스와 그 최대주주의 이행각서에서 명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하나방송(주)의 이행각서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계획대로 이행
- 지역센터 통합 운영
-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확대,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 최다액출자자인 (주)커뮤닉스와 그 최대주주의 이행각서 주요내용

- 하나방송(주)이 영업부진으로 영업이익 감소시 증자 20억원 및 신규차입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계획 이행
- (주)커뮤닉스는 '10. 7월 취득한 주식 40만주(18.7%)를 3년간 매각하지 않음

바. (주)경기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최다수 주식보유자를 변경하고, 소유지분 관련 방송법 위반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변경허가와 재허가를 받은 (주)경기방송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사.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 2010년 9월에 접수된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여 의결함.

자.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별표5-2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심의하여 의결함

< 고시 주요 내용 >

-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적 규정 위반시 산정기준

위반 유형	부과 과징금
영업보고서 미제출	제출지연일 등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장부(자료) 미비치	1억원 이하
검증관련 명령불이행	불이행 유형에 따라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 영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실체적 규정 위반시 산정기준

기준금액	■ 기준금액 = 회계장부상 오류발생금액 × 부과기준율(0.5%~0.25%)
필수적가중	■ 회계자료의 위·변조, 고의적 은폐 조작에 대한 가중률 적용
추가적 가중·감경	■ 위반행위 증감, 위반행위 반복여부에 따라 추가적 가중·감경 ■ 자진 시정, 자체교육, 회계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노력시 경감 등

※ 위원회 기 보고('10.9.8.)된 내용에서 자체 행정규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반영(단순 실수에 의한 회계위반의 경우 감경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

[보고안건]

가.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o '10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함

〈첨부1〉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

□ 허가심사 방법 :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합하여 진행

-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 항목의 중복성(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고려할 때,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고,
 -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진행

□ 허가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

○ 허가심사는 허가신청적격 심사(예비심사)와 사업계획서 심사(본심사)로 구성

○ 허가신청적격 심사

-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 외국인 지분제한(49% 초과소유)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위원 구성) 법률·경제·경영·회계·방송통신 분야 등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및 평가)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향후 일정

- 2010. 12. 24 : 허가신청적격 심사 및 적격여부 통보
- 2011. 2월중 : 사업계획서 심사 및 허가대상법인 선정(위원회 의결)

〈첨부2〉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심사계획안

□ 변경허가 신청 사업자

- 창원문화방송(주), 진주문화방송(주)

< 대상사업자 현황 >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TV	DTV	소계	AM	표준FM	FM	소계	
창원문화방송(주)	1	1	2	1	1	1	3	5
진주문화방송(주)	1	1	2	1	1	1	3	5

□ 심사 기본방향

-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해당지역 시청자,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청취 및 지역방송발전 위원회의 의견 수렴
- 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법인합병 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인 점을 중요하게 고려

심사 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총1천점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능력	
6. 기술적 능력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 세부항목 및 배점, 감점기준 결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허가여부 결정 기준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변경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변경허가' 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성방안 : 방송통신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9인

구 분	구 성 (안)	중점심사분야
위 원 장	방송통신위원	심사총괄
심사위원	방송 분야 2인	방송의 공적책임,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법률전문가 1인	법적 타당성
	경영·회계 분야 2인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기술 분야 1인	기술적 능력
	시청자 분야 1인	방송의 공적책임,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간사

□ 추진계획(안)

- '11. 1월 : 해당지역(창원,진주) 시청자 의견 청취
- '11. 2~3월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견 청취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